

「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」 중도참여자 모집공고

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. 8. 26.(수)

1. 근무조건

☐ 근무유형 안내

구분	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	
근무기간	근무시작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	
근무시간	주 14시간 이내 (월 56시간)	
급여	577,920원 (고용보험, 산재보험 필수가입) ※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	
근무지	1) 동대문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(동대문구 청계천로 521, 9층)	1명
	2)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(동대문구 청계천로 521, 1층)	1명

2.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

- ☐ 공고기간 : 2026. 8. 26.(수) ~ 9. 9.(수) <총 14일>
- ☐ 모집기간 : 2026. 8. 26.(수) ~ 9. 9.(수) <총 14일> / 09:30~17:30
- ☐ 모집인원 : 2명 -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
- ☐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1. 동대문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(총 1명)	
구인사항	
주 소	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9층
분 류	환경정리(1명)
직 무	센터 전반청소, 단체급식 식기세척, 주방 및 식당청소
채용인원	총 1명
학 력	무관
경력요건	무관
기타사항	관련 근무 경험자 우대

근로조건	
고용형태	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: 근무시작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근무형태	주5일 (주14시간)
근무시간	오후(1명) : 월~목 11:00~14:00(3시간), 금 11:00~13:00(2시간)
가입보험	고용보험, 산재보험
급 여	577,920원(개인부담금 공제전)
퇴직금	해당 없음
편의시설	승강기(엘리베이터), 장애인전용화장실
복리후생	명절선물(연 2회)
작업환경	
드는 힘	해당 없음
서거나 걷기	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
듣고 말하기	간단하게 듣고 말하기 필요
시력	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
손작업	큰 물품 조립 작업할 수 있는 정도
양손작업	양손으로 작업

2.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(총 1명)	
구인사항	
주 소	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1층
분 류	카페지원(1명)
직 무	더드림카페 음료제조 및 카페청소(1명)
채용인원	총 1명
학 력	무관
경력요건	무관
기타사항	*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

근로조건	
고용형태	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: 근무시작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근무형태	주5일 (주14시간)
근무시간	오전(1명) : 월~목 09:00~12:00 (3시간), 금 09:00~11:00(2시간)
가입보험	고용보험, 산재보험
급 여	577,920원(개인부담금 공제전)
퇴직금	해당없음
편의시설	승강기(엘리베이터) , 장애인전용화장실
복리후생	명절선물 (연 2회)
작업환경	
드는 힘	해당없음
서거나 걷기	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
듣고 말하기	듣고 말하기 중요
시력	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
손작업	큰 물품 조립 작업할 수 있는 정도
양손작업	양손으로 작업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 - 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-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- 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 -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.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□ 신청자격 :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- 연령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(2026.1.1.)으로 적용

□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-1차 서류심사 : 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(2026. 9. 9.(수)까지 방문접수)

-2차 면접심사(예정) : 2026. 9. 15.(화) 14:00

※ 면접대상자에게는 2026년 9월 17일(목) 17:30까지 개별 유선 연락

※ 면접 및 결과발표는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, 변경 시 추후 통보

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2026. 9. 9.(수)까지 방문접수)

※ 방문 접수 때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일정 및 시간조정 필수

□ 접 수 처 :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실 - 장노년건강지원팀
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(다사랑행복센터 3층)

□ 문 의 : 장노년건강지원팀 안예슬 사회복지사 (070-4522-4751)

□ 제출서류 : <필수서류>

① 참여신청서: 희망직무 기재, 장기요양등급 유무 기재, *자필서명 필수
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: 자필서명 필수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: *자필서명 필수

※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※ 서류 프린트가 어려울시, 복지관에서 제공

<추가서류> *해당자에 한함

구분	증빙서류		
① 자격증 소지자	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: 바리스타 1·2급		
② 졸업예정자	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		
③ 여성가장	구분	첨 부 서 류	
	공통 사항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
	선택 사항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
		가출 · 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
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 확정판결문
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④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	-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	
⑤ 취업지원대상자	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
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	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23~25년) 이내 사용가능	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 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--

5. 기타 참고사항

- ☐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한가지 이상 필수 제출)
※ 예시 :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, 직업재활서비스(직업훈련) 확인서,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,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 필증
- ☐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·연차 미지급
- 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- 24세 이하(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 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 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- ☐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- *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- * 장애인 일자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9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*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」을 작성하여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노년 건강지원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제공안내·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입니다.

- ☐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

- 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-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- *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-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노년건강지원팀 안예슬 사회복지사 (070-4522-475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선발위원별 채점 총점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지에 배치되므로, 희망한 직무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